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 
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97호
- 나. 제 출 자 : 류명기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사전점검 대상시설(안 제4조)
- 다. 시설주, 점검요원의 의무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라. 편의시설의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·반영(안 제8조~제9조)
- 마.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신청(안 제10조~제11조)
- 바. 업무의 위탁 (안 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 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,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구청장의 장애인 등에게 편리한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각종 시책 마련 및 예산 확보 등 강구

#### 2) 사전점검 대상 시설 규정(안 제4조)

-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점검 시설을 규정함

#### 3) 시설주, 점검요원의 의무 규정(안 제5조~제7조)

- 법정 의무설치 대상 시설의 설치 및 점검요원의 의무사항 규정

#### 4) 편의시설의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·반영(안 제8조~제9조)

- 대상 시설의 점검 시기 및 점검요원은 5일 이내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

#### 5)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신청(안 제10조~제11조)

- 법정 의무대상 시설 외 시설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신청 절차를 규정

#### 6) 업무의 위탁 (안 제12조)

-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상위 법률에서 정한 의무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,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·관리되도록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57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**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**제7조(대상시설)**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공원
2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3. 공동주택
4. 통신시설
5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**제9조(시설주등의 의무)**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(용도변경을 포함한다)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,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